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 안 경 위

가. 발 의 자 : 정준호 의원 외 11명

나. 의안번호 : 제1561호

다. 발의일자 : 2024.02.05

라. 회부일자 : 2024.02.07

2. 제 안 사 유

- 현행 조례에 따라 대형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저수조 등 급수설비의 소독등 위생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음.
- 시장은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의 소독등 위생조치 이행여부를 지도·감독하도록 하고 있으나, 설치 신고 의무는 부여하지 않아 저수조의 원활한 위생관리가 미흡한 실정임.
- 이를 보완하기 위해 최근 상위법(「수도법」 제33조제2항) 개정에 맞춰 대형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저수조의 설치 및 보유와 관련하여 시장

에게 신고하는 의무와 위반 제재 규정을 마련하여 저수조 위생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3. 주 요 내 용

가. 대형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저수조를 설치한 경우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함(안 제40조의2제1항)

4. 참 고 사 항

가. 관련 법령 : 「수도법」

나. 예산 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참조

5. 검 토 의 견

가. 개요

-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대형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저수조 설치 시 이를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위반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것임.

나. 검토의견

- 현행 조례 제40조의2에서는 대형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로 하여금 저수조 등 급수설비에 대한 위생조치를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제 40 조의 2(대형건축물등의 소독등 위생조치) ① 「수도법」 제 33 조제 2 항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 50 조에 따른 건축물¹⁾ 또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 22 조의 3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독등 위생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 1 항에 따른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소독등 위생조치를 하는지에 대하여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③ 제 1 항에 따른 규정을 위반하여 소독등 위생조치를 하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수도법」 제 83 조에 따라 2 년 이하의 징역 또는 2 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 이를 근거로 서울시는 매년 본부장 방침에 따라 저수조 위생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지난 2021년 행정사무감사시 저수조 위생관리 미흡 등 시의회 지적에 따라 2022년부터는 저수조 관리시스템을 마련하여

1) 대형건축물 : 연면적이 5천㎡ 이상인 건축물이나 시설, 연면적 2천㎡ 이상인 둘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연면적 3천㎡ 이상인 업무시설, 객석 수 1천석 이상인 공연장, 대규모점포, 지하도에 있는 연면적 2천㎡ 이상인 상점가, 관람석 1천석 이상인 실내체육시설, 연면적 2천㎡ 이상인 학원, 아파트 및 그 복리시설, 연면적 2천㎡ 이상인 음식점 등

서울시 저수조 현황을 DB(데이터베이스)화하여 위생관리 강화에 힘쓰고 있음.

다만, 현재 대형건축물의 소유주나 관리자가 저수조를 설치하더라도 신고 의무가 없어 서울시(수도사업소)에서는 대형 건축물의 저수조 설치 현황 파악이 쉽지 않은 실정이며, 이로 인해 저수조 위생조치에 대한 지도·점검 누락 가능성이 있어 왔음.

- 이에 최근 상위법령인 「수도법」 개정²⁾에 따라 금년 하반기부터 대형 건축물에 대한 저수조 등 급수설비에 대한 설치 신고를 의무³⁾화한 바, 이를 반영한 동 조례 개정을 통해 향후 대형건축물 저수조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을 토대로 위생 관리 강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임.
- 한편, 현행 조례 제40조의3에서는 「수도법」 제33조제5항 단서⁴⁾에 따라 소형건축물에 대해서도 저수조 위생조치를 의무화하고 있는바, 대형건축물 저수조와 같이 설치 신고 의무를 별도 규정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임.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제 40 조의 3(소형건축물의 청소등 위생조치) ① 「수도법」 제 33 조제 5 항 단서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 50 조에 해당되지 않는 건축물이나 시설에 저수조를 거쳐서 수도물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이나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반기 1 회 이상 저수조를 청소하여야 하며, 신축되었거나 1 개월 이상 사용이 중단된 경우 사용 전 청소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 1 항에 따른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청소등 위생조치를 하는지에 대하여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2) 2024년 1월 17일 개정

3) 2024년 7월 17일 시행

4) “다만, 제2항에 따른 규모 이상의 건축물 또는 시설을 제외한 건축물 또는 시설에 대한 소독등위생 조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서울시 대형 건축물 저수조 현황(2023년 기준)

(단위 : 개소, 천 m^3)

구 분		총계	중부	서부	동부	북부	강서	남부	강남	강동
저수조 개수		27,492	4,166	1,537	2,461	2,566	2,916	4,268	6,513	3,065
저수조 용량		5,515	632	916	579	610	696	619	952	511
100 m^3 이하	개수	16,566	2,221	733	1,514	1,774	1,649	2,705	3,889	2,081
	용량	566	61	29	53	48	73	84	164	54
100 m^3 초과	개수	10,926	1,945	804	947	792	1,267	1,563	2,624	984
	용량	4,952	572	887	527	562	623	535	788	458

서울시 소형 건축물 저수조 현황(2023년 기준)

(단위 : 개소, m^3)

구 분		총계	중부	서부	동부	북부	강서	남부	강남	강동
저수조 개수		2,340	225	178	116	184	276	215	826	320
저수조 용량		62,851	4,926	5,569	2,962	5,298	6,896	6,405	25,732	5,063
100 m^3 이하	개수	2,248	221	174	113	178	273	214	758	317
	용량	42,395	3,061	4,292	1,549	3,806	5,112	5,565	15,084	3,926
100 m^3 초과	개수	92	4	4	3	6	3	1	68	3
	용량	10,860	495	414	842	615	200	120	7,934	240